

대구지방법원 2022. 1. 26 선고 2021나3071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2. 1. 26 선고 2021나307196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21. 2. 9 선고 2019가단12112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최석완

변론종결 2021. 11. 3.

판결선고 2022. 1. 26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. 2. 9. 선고 2019가단121121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B과 제1심판결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7. 13.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B에게 제1심판결 별지 '채권의 표시'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, 채무자인 대한민국(소관: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)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지영, 판사 권준범, 판사 장래아